

제2705호
2020. 1. 1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제2020-3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 제2020-3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3

● 고 시

- 제2020-6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4

● 공 고

- 제2020-17호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5
- 제2020-18호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공고 6
- 제2020-19호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8
- 중구 인사위원회 제2020-2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의약과장(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31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자금 지원사업의 용자 실적이 적고 유사 용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자금의 존치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

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된 자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자된 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 주거담당, 전화 : 3396-5392, FAX : 3396-8736, E-mail : kmsin@jungg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된 자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자된 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3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자금의 지급 및 융자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 주거담당, 전화 : 3396-5392, FAX : 3396-8756, E-mail : kmsin@jungg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자금의 지급 및 융자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6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중구 삼각동 118일대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775	552064.03	198719.15	451758.18	198648.28	삼각동 118-6
9776	552072.88	198683.18	451767.03	198612.31	삼각동 118-5
9777	552041.07	198679.02	451735.22	198608.15	삼각동 27-2
9778	552031.94	198650.45	451726.09	198579.58	삼각동 34-5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비고
설치일		2019년 12월 13일			
표지의재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17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제5조와 같은 법 제9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 거주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기준일 2019. 12. 31.)

구 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총 수	113,665 명
주 민 수	112,574 명
외국인 수	1,091 명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18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된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중구청장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받아야 할 서명인 수
중 구 청 장		113,545	17,032
동 명	소 공 동	1,778	267
	회 현 동	5,020	753
	명 동	2,771	416
	필 동	3,664	550
	장 총 동	4,307	647
	광 희 동	4,662	700
	을 지 로 동	1,736	261
	신 당 동	7,127	1,070
	다 산 동	13,191	1,136
	약 수 동	15,409	1,136
	청 구 동	12,628	1,136
	신당 제5동	9,456	1,136
	동 화 동	9,271	1,136
	황 학 동	11,594	1,136
	중 림 동	10,931	1,136

▣ 중구의회 지역구의원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받아야 할 서명인 수
중구 가선거구		29,005	5,801
동명	소 공 동	1,778	291
	명 동	2,771	291
	광 희 동	4,662	291
	을 지 로 동	1,736	291
	신 당 동	7,127	291
	중 립 동	10,931	291
중구 나선거구		30,321	6,065
동명	신당 제5동	9,456	304
	동 화 동	9,271	304
	황 학 동	11,594	304
중구 다선거구		26,182	5,237
동명	회 현 동	5,020	262
	필 동	3,664	262
	장 총 동	4,307	262
	다 산 동	13,191	262
중구 라선거구		28,037	5,608
동명	약 수 동	15,409	281
	청 구 동	12,628	281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19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지방자치법」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주민총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기준일 2019. 12. 31.)

구 분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총 수	113,544 명
주 민 수	112,574 명
외국인 수	970 명

●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25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약과장(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의약과장(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채용인 원	주요 직무내용
의약과장	일반임기제 (개방형5호)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지 방약무사무관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 1차진료, 차고진료,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 신고처에 관한 사항 • 「약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영양개선 및 운동에 관한 사항 •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 청소년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임용기간: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총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약정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신분 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요건

-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장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장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인원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자격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소지자 중 다음 경력요건 해당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자

구 분		자 격 요 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 준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⑥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의료, 보건 분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1. 29.(수) ~ 2. 4.(화)[5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증구청 행정지원과(별관 옥상 인사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모두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증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본관 1층 민원여권과)
 - ※ 대리접수 등으로 마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안내공고	면 접 시 험	
	날 짜	장 소
2020. 2. 6.(목) 예정	2020. 2. 10.(월) 예정	증구청 기획상황실 또는 지하합동상황실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
(시험 관련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일정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문가적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하한액 46,734천원**을 원칙으로 하되(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에 근거하여 책정),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함.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10,000원(※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에서 응시원서에 인 증 기 날 인)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 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별급 확인자 서명 및 연차)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기타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 참여에 따라 소득발생 등의 사유로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응시희망자는 관련 내용을 사전확인 후 응시하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는 임용 시 연금 전부가 지급 정지되니 관련 내용을 사전확인 후 응시하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02-3396-4515)

[붙임]

응 시 원 서(원 본)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약과장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의약과장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의약과장
성명	(한글)	(한자)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일반임기제 다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감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인지 : 서울 중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담당 창구에
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
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의약과장	성 명

나. 응시 자격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 담당업무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다. 우 대 사 항 ※ **공고문에서 우대사항으로 정함이 있는 근무경력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 작성**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 자격명	직 위	담당업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0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 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수기 작성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수기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주민등록 세대구성정보,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채용심사를 위한 평가자료 및 사실 확인 용도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필수 개인정보 미제공시 지원 불가 - 평가항목정보 미제공시 평가점수 감점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 거부에 따라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0년 월 일

정보제공주체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